■ 공소청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157호의16서식] <개정 2026. 10. 1.>

○○○공소청

(000-0000-0000)

제 0000-0000 호 0000. 00. 00.

수 신 : ○○○법원장 발 신 : ○○○공소청

제 목 : **잠정조치 기간연장 등 청구** 검 사 ㊞

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잠정조치의 기간연장[] · 종류변경 []을 청구합니다.

<table>
<tr><td rowspan="4">행 위 자</td><td colspan="3">성명 ()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주민등록번호 (세)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직업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주거</td></tr>
<tr><td>변 호 인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잠 정 조 치 결 정 서 번 호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잠정조치 종류</td><td>[] 1.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
[] 2.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이나 그 주거, 직장, 학교,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[] 3.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[] 4.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
[] 5.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</td><td>변경할 잠정조치 종류</td><td>[] 1.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
[] 2.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이나 그 주거, 직장, 학교,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
[] 3.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, 가족에 대한 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
[] 4. 「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
[] 5.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</td></tr>
<tr><td>잠정조치 기간</td><td></td><td>연장 또는 변경할 잠정조치 기간</td><td></td></tr>
<tr><td>잠정조치의 기간 연장 · 종류변경이 필 요 한 이 유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기 각 하 는 취지 및 이유</td><td colspan="3">판사 ㊞</td></tr>
</table>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